

제29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 10. 2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년 10월 24일
전문위원 권 오숙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2023 - 104

나. 제출자: 강서구청장

다. 제출일자: 2023년 10월 12일

라. 회부일자: 2023년 10월 16일

2. 제안이유

기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일반회계로 진행하였으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특별회계 설치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세입 (안 제3조)

다. 세출 (안 제4조)

라. 세출예산의 이월 (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의2

나. 예산조치: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익금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

다. 합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3. 4. 12. ~ 5. 2.) 결과: 의견 없음

2)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원안 동의

3) 규제심사(기획예산과):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가족정책과):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가. 제정취지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022. 11. 15.)에 따라 해당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와 제2조는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과 지원사업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상위 법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세입]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세출]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

- 안 제5조에서는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회계¹⁾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원사업은 발전소 설치지역 반경 5km 이내에 있는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현재 연 1,830만원 규모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집행하고 있음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

(단위:천원)

연번	발전소명	소재지	지원금액	비고
1	서남바이오	강서구 양천로 201	12,900	
2	노을연료전지발전소	마포구 하늘공원로 108-2	5,400	

1) 특별회계: 특정한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 회계와 독립된 별개의 세입·세출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

- 특별회계란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²⁾ 및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³⁾에 따라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며
- 상위법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⁴⁾의 개정사항 또한 지원사업의 시행자인 구청장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이를 통해 발전소 주변지역을 개선하고, 보다 철저한 회계 관리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2) 「지방자치법」 제141조(회계의 구분) 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 3)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 4)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시·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 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08. 2. 29., 2011. 3. 30., 2013. 3. 23.>

1.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원금의 사용) ① 지원금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되는 사업의 종류와 지원금의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5.>